
Policy and Law Report _Vol.10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9.6 ~ 9.12) -

September 13, 2021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p>•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뉴딜 2.0 확산 및 국민 체감 정보통신정책을 수립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산업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경제를 뒷받침하는 클라우드산업 성장으로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2~'24)」 수립 ②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을 선도할 키워드,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의 산업·시장 활성화와 기술 선도를 위한 체계적 전략 마련 ③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환경 변화와 글로벌 추세에 대응하여 적합성평가 패러다임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제도 개선 종합계획」 수립 ④ 202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실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중심으로 산업 사회 쏠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 경제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2021-09-06
	<p>• 5세대(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 개최</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및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5세대(5G) 특화망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특화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문가·수요기업 간담회를 통해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방안 논의 ② 11월 주파수 공급을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에도 박차 ③ 비(非)통신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 출범 등이 있음 	2021-09-07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p>• 탄소자원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p>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원천기술개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22년 신규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탄소자원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함</p> <p>“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등 4개 사업은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획한 사업으로, 배출된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거나, 폐플라스틱 등의 탄소원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임</p> <p>주요 사업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탄소자원화 플랫폼 화합물 제조기술개발 : ('22년도예산 정부안) 66억원 ②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3050 : ('22년도예산 정부안) 90억원 ③ 석유대체 친환경화학기술 개발 : ('22년도예산 정부안) 75억원 ④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기술개발 : ('22년도예산 정부안) 30억원 	2021-09-08
산업통상 자원부	<p>•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 <p>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지혜택에 확대된 공급대상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 추가 -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국내복귀 기업에서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과 추가 ② 경영활동·개발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의 한도를 2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 - 산업의 고도화·첨단화로 산업·연구·주거·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용·복합과 신산업·서비스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 	2021-09-06

부처	내용	일시
	<p>③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절차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전략산업 선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핵심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 대상 산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 <p>④ 경제자유구역청 업무 확대에 따른 규정 보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이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추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 시 고려사항*, 파견인력 요청범위** 등에 반영 * 경제자유구역 업무 담당, 도시, 물류, 사회기반시설 개발, 외투기업·자본 유치,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 개발업무 + 신산업과 기업의 육성·지원 또는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 	
산업통상 자원부	<p>• '21년 하반기 수소·연료전지 분야 신규 기술개발 과제 공고</p> <p>산업통상자원부는 '21년 하반기 수소·연료전지 분야 신규 기술개발 과제를 공고하고 추진할 계획임. 대상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개발과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내 9개 과제이며, 1차년도에는 총사업비 720억원 중 128억원이 지원될 예정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전해(AEM:Anion Exchange Membrane)를 통한 수소 생산방식 중 하나인 음이온교환막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암모니아로부터 수소를 대량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대규모 청정수소 공급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함 ② 현재 수소차 위주의 수소 모빌리티를 항공용·선박용 등 다양한 수송분야로 확대하여 탄소배출 저감을 촉진하고자 함 ③ 기타 LNG를 사용하는 건물용 연료전지의 CO2 포집 기술 확보, 청정수소 기반 친환경 수소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청정수소 인증제도 설계 등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도 지원할 예정임 	2021-09-09

부처	내용	일시
환경부	<p>• <u>녹색산업의 고용여력 확충을 위해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 마련</u></p> <p>환경부는 그린뉴딜 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2025년까지 환경일자리 8만개를 창출하고 녹색융합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환경분야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전략'을 추진하기로 함</p> <p>일자리 창출전략 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유망 녹색 신산업 일자리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환경제 산업) 재활용 업계의 고품질·고소득 재활용을 위한 R&D 및 제도개선, 소각·매립 등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일자리 확충 - (물산업) 상·하수도에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신수요 창출, 물절약 등 유망분야 물전문 기업 육성 및 세계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 (기후대응 신산업) 수열에너지·폐자원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제도개선 등 혁신저변 구축, 미래차 및 충전소 보급 확대 <p>② 녹색기업 성장지원으로 고용여력 확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창업) 혁신적 아이디어로 도전하는 창업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 사업화·매출 달성까지 지속 지원 - (새활용산업) 폐기물에 청년의 아이디어를 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해 소재수급 체계, 소비문화 확산 등 생태계 구축 - (사업화·실증·상용화) 녹색산업 전과정 맞춤형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상생협력·혁신 설비 등 다양한 지원으로 기업의 고용여력 확충 추진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프로젝트) 친환경 대체소재, 신재생에너지 등을 개발·생산하는 유망 중소·벤처 100개사 발굴, 예비유니콘으로 육성 - (지역거점) 녹색산업분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과 연계한 기업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 스마트 그린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녹색전환 촉진 <p>* 청정대기(광주), 생물소재(인천), 수열에너지(춘천), 포스트 플라스틱(부산), 폐배터리(포항)</p> <p>③ 지원기반 구축으로 일자리 지속가능성 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전환지원)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 ESG 대응 환경분야 컨설팅 통합지원 확대, 탄소국경세 대비 제도개선 및 LCI DB 현행화 - (녹색금융)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환경부문 책임투자 제도개선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정책금융 약 5조원 목표), 정책융자('25년까지 1.9조원), 녹색펀드 조성 등 녹색산업의 자금 확보 지원 - (인력양성 등) 현장수요와 미래 필수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신기술 인재양성*, 산 학연계 및 환경과 디지털의 융합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인재양성 체계 마련 등 교육수료 후 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전문인력 양성 <p>* ('22년 신규)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2개소), 물기업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1,700명), 미래차 환경인증평가(20명), 미래차 인프라 구축 운영·관리(50명)</p>	2021-09-09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9.16. 시행예정) <p>다양한 기업성장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282호, 2021. 6. 15 공포, 9. 16 시행)됨</p> <p>이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확인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던 종전의 규정을 정비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p> <p>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대상 및 차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p> <p>* 명문장수기업 :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경제적·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크고, 혁신역량이 뛰어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p>	2021-09-07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021.9.10 시행) <p>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 등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추가하려는 것임</p>	2021-09-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식품 의약품 안전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1.9.9 시행) <p>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비대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현지실사 거부와 마찬가지로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p> <p>이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을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2021-09-09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보건 복지부	<p>•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p> <p>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성에 우려가 적은 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료현장 선진입 기회 확대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확대, 기간 연장 및 유예 요건을 완화함 (안 제2조) ②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검토사항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화 함 (안 제3조) ③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제한적 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의 부작용 관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함 (안 제3조의3) ④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 <p>※ 의견제시기간 : 9/6(목)~10/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p>	2021-09-06
환경부	<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우려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기준과 보관기준을 강화하여 고형연료제품의 고품질화를 이루고자 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관련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기준 강화 (안 별표7, 별표7의2) - 일반 고형연료제품 등급 중 양호를 폐지하여 2등급 체계(최우수, 우수)로 전환 ② 일반 고형연료제품 보관기준 강화 (안 별표10) - 보관창고를 갖출 경우 실외 보관이 가능한 제품을 바이오 고형연료제품으로 한정하여 일반 고형연료제품의 보관기준 강화 <p>※ 의견제시기간 : 9/6(목)~10/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p>	2021-09-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고용 노동부	<p>•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p> <p>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과 사고사망 다발 대기업을 보험료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036호, 2021.4.13. 공포, 2022.1.1.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세부 규정과 개별실적요율 증감비율 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하청재해의 원청요율 반영을 위한 보험수지율 산정방법 규정 (안 제17조)</p> <p>- 도급인이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사용자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수급인·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따라 검찰청에 송치된 경우 등은 하청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를 원청 보험수지율에 반영</p> <p>② 사고다발 대기업 보험료 할인액 조정 (안 제18조)</p> <p>- 최근 3년간 통합 사고사망자 수의 합이 3명 이상인 경우, 산업재해 발생 은폐 또는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2회 이상 등을 반영하여 개별실적요율의 할인을 조정</p> <p>※ 의견제시기간 : 9/10(금)~10/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로 제출</p>	2021-09-10
국토 교통부	<p>•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 <p>건설공사 실적 증명시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민간발주자로부터 증명서 발급에 따른 소요기간이 과다하여 건설사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로 갈음하도록 하는 한편,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가산 확대 및 신인도 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 의견제시기간 : 9/6(목)~10/18(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로 제출</p>	2021-09-06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방송통신위원회	<p>•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고시 일부개정고시안」</p> <p>「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방송광고매출을 반영하여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 평균비율,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를 책정하고 결합판매사업자의 결합판매비율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 위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결합판매사업자별 결합판매된 평균비율[별표1] 산정 -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6년~2020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결합판매 총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p> <p>② 결합판매사업자별 지원대상 및 결합판매 최소 지원규모[별표2] 산정 - 직전 회계연도 5년간(2016년~2020년)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의 결합판매 매출액을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총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p> <p>※ 의견제시기간 : 9/6(월)~9/2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정책과)로 제출</p>	2021-09-06
공정거래위원회	<p>•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일부개정안」</p> <p>「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1년 12월 30일 시행)에서 도입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신고요령을 규정하고 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거래금액 기반 신고요령 세부기준 (V.장 신설) - 기업결합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함 - 국내활동의 상당성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함</p> <p>②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II. 3. 개정) -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대상에 대해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규정함</p> <p>※ 의견제시기간 : 9/9(목)~9/2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합과)로 제출</p>	2021-09-09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등 10인)」</p> <p>최근 배달앱, 중고거래앱 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 등록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 사기 등의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p> <p>그런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개인정보 악용 범죄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이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제3항, 제40조의2 신설)</p>	2021-09-07
	<p>•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p> <p>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지점·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제도를 사후 보고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함</p> <p>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고, 출장소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1-09-0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문화체육 관광 위원회	<p>•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2인)」</p> <p>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으로 건강 및 학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셋다운제”를 운영하고 있음</p> <p>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도 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로서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셋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있으며,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 또는 해외 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기도 하여 셋다운제가 10년 가까이 시행되어 오면서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예방 및 수면권 확보를 위한 입법목적은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오히려 셋다운제는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낙인효과를 가져와 기업 매출과 투자에 대한 부정적 효과 및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 인터넷게임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문화콘텐츠로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이에 게임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셋다운제”를 폐지하고, “중독”이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인식을 개선하며, 게임과몰입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자 함 (안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 신설 등)</p>	2021-09-03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p>•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등 10인)」</p> <p>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심각한 일자리 감소 상황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통해 개선시키 고자 노력 중이며, 우리나라 역시 지난 2013년 이 법 제정을 통하여 국내 제조업 분야의 일자 리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에 대하 여 각종 세제혜택 및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p> <p>그러나 유턴기업 관련 기준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 경영여건 악화 로 실제 유턴 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하여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역시 저조한 상황임. 또 한 2018년 한국경제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목적 대부분이 ‘해외시 장 개척(77.1%)’인 점을 감안할 때 기업 이전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정책 지원은 기업의 유턴 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이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외 아웃소싱을 국내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 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 및 제17조의2 신설)</p>	2021- 09-08
	<p>•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등 10인)」</p> <p>현행법의 국가핵심기술의 비공개 규정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에 관 한 정보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기업들이 관련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그 사업 장에 관한 공익적 문제제기를 억압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p> <p>또한 산업기술의 취득 혹은 사용·공개 등에 “부정한 방법”,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 기 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등이 없더라도 “제공받 은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공개하기만 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과 관련하여 산업기 술이 ‘포함된 정보’라는 규정이 지나치게 모호한데다, ‘산업기술’ 기술목록은 지나치게 광범 위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 이 있음</p> <p>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산업기술의 보호 및 공익적인 문제제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 로써 국민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제14조제8호·제34조제 10호 삭제 등)</p>	2021- 09-08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보건복지위원회	<p>•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2인)」</p> <p>현행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러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은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p> <p>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음</p> <p>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제1항 단서 삭제 및 안 제12조의5 신설)</p>	2021-09-06
환경노동위원회	<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p> <p>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함 (안 제37조제2항 신설)</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 등에 참여한 사업주의 임금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간접적으로 예방함 (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p> <p>③ 사업주가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2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3조의4 신설)</p>	2021-09-06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p>④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체납금액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안 제43조의5 신설)</p> <p>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안 제49조)</p> <p>⑥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면책범위를 축소함 (안 제109조제2항)</p>	
	<p>•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p> <p>20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가 적용됨</p> <p>그런데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인력 부족, 촉박한 납기일 등을 고려할 때 연장근로 실시가 불가피하며, 주 52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부과되는 벌칙이 부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p> <p>이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받는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조정하되, 벌칙조항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2년 후로 유예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변경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10조제1호 및 제111조)</p>	2021-09-08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9/13(월) 14:00	대정부질문:정치	
	9/14(화) 14:00	대정부질문:외교·통일·안보	
	9/15(수) 14:00	대정부질문:경제	
	9/16(목) 14:00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9/16(목) 10:00	「국민통합을 위한 헌정제도 개편 세미나」 개최	국회접견실
	9/1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6호 발간	
국회도서관	9/1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3호 발간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미국·프랑스 입법례	
	9/14(화)	「현안, 외국에선?」 제19호 발간 - 양육비 이행확보 정책, 영국에서는 어떻게?	
	9/15(수)	국외 현안리포트 - 유럽 그린딜-코로나19 이후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회복을 향한 길	
	9/16(목) 11:30	제16차 「밥 대신 지식강좌」 - 민간 주도 규제거버넌스 혁신 전략	온라인
예산정책처	주중	「예산정책연구」(제10권 제3호) 발간 - 한국의 정부회계와 재정통계: 변천과정과 개선과제 등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9월호 발간 - 미 연준의 테이퍼링 동향 점검과 시사점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입법조사처	9/15(수)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경과 및 제도개선 과제	
	9/13(월) 14:00	「전문가 간담회」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간담회 시리즈 3: 지방소멸에 대비한 지역발전 전략 - 마강래 교수(중앙대학교)	온라인
	9/14(화) 10:00	「전문가 간담회」 - 남북 당국간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 분석 - 이완범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온라인
	9/15(수) 16:00	「전문가 간담회」 - 동물 법적 지위 정비 - 양재모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온라인
	9/17(금) 15:00	「전문가 간담회」 - 국회입법과정 개선방안 - 임종훈 교수(중앙대학교)	온라인

[별첨1] 제391회 국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9/15(수) 10:00	청문회	대법관(오경미) 임명동의안 심사
예결위	9/14(화) 11:00	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9/15(수) 10:00	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9/16(목) 10:00	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9/17(금) 10:00	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운영위	9/13(월) 10:00	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9/15(수)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법사위	9/14(화)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9/16(목) 10:00	전체회의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기재위	9/15(수) 10:00	전체회의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교육위	9/14(화) 09:20	전체회의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과방위	9/14(화) 09:00	법안2소위	법안 심사
	9/14(화) 11: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9/16(목) 10:00	법안1소위	법안 심사
외통위	9/15(수) 13:30	전체회의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국방위	9/15(수) 10:00	전체회의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행안위	9/13(월) 10:00	전체회의	법안 상정,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9/14(화) 10:00	법안심사2소위	법안 심사
	9/15(수) 10:00	법안심사2소위	법안 심사
문체위	9/13(월)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법안상정 등
농해수위	9/16(목) 10:00	전체회의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환노위	9/13(월) 10: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9/13(월) 전체회의 산회후	결산소위	2020회계연도 결산
	9/14(화) 13:3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국토위	9/14(화) 10:00	교통법안소위	법안 심사
	9/15(수) 10:00	교통법안소위	법안 심사
	9/16(목) 10:00	전체회의	법안상정 및 심사,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여가위	9/13(월) 13:00	전체회의	2020회계연도 결산, 2021년도 국감계획서 채택 등

※ 위원회 일정은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13(월) 10:00	국회「모빌리티 포럼」3차 세미나 - 인류를 위한 모빌리티의 미래, 로보틱스	권성동, 이원욱 의원실, 국회「모빌리티 포럼」외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
9/14(화) 10:00	경기도 플랫폼 공정경제 국회토론회	강득구, 김남국, 김한정 의원실, 경기도 외	글래드호텔 블룸A홀
9/14(화) 10:00	실패한 경제정책 국민속이는 문재인 정부	임이자 의원실	국회 본관 228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9/7(화) 14:00	<u>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u> -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	송갑석, 이동주 의원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외	국회 본관 220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을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